

담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」
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
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
합니다.

2023. 1. 2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
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최근 장기간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건
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
물 절약을 유도하여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아. 과태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. 20. ~ 1. 27.(8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–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–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 건 서		
1. 조 례 안	담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	
2. 의 건	관련조문	의 건
3. 기 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(전화 :) 성 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절수설비”란 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.
2. “절수기기”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
3. “절수설비 등”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: 절수설비
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(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)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: 절수설

비 및 절수기기
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: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

4.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: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

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) 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)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
2.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, 홍보
3.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

제8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) ① 건축주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

행책임을 진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1.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
2. 납품확인서
3.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
4. 현장설치사진

제9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)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

제10조(과태료)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9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